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 충청북도의회운영 및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처 운영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행정이나 행태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 지원케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심의, 집행감시 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음.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기관	장소	감사방법
11. 30(화) (10:00)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현황보고 및 청취 ○ 자료요구·심사 ○ 질의답변

3.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위원	감사보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운	정운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이광종 강우신	전문위원 김승진 운영담당 송병태 보조직원 오유길 속기사 안인옥 장미남

4. 주요감사사항

- 가. 업무추진 현황
- 나. 예산집행 사항
- 다. 청원 및 진정의 접수·처리사항
- 라. 의정활동 홍보 실적 등

5. 감사결과

가. 주요감사 실시내용 (총 3건)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1) 의회자료실 원칙 운영 촉구

의회자료실의 인력 및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의 의정수집, 열람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실 운영에 원칙을 지키도록 촉구.

2) 건의사항 (2건)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부 철저

의정활동 홍보매체인 의회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수요량에 따른 적정 부수를 발행하고 이장, 통장, 남녀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구민에게 의회소식지를 배부 할 경우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과, 사전에 신청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2) 원격지거주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한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은 적용기준 및 지급방법 등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람.